

V. 권징조례



- 제1장 총칙 _ 147
- 제2장 소송 당사자와 소의 제기 _ 148
- 제3장 소송 절차 _ 150
- 제4장 판결 _ 155
- 제5장 상소 _ 157
- 제6장 재심 _ 159
- 제7장 소원 _ 160
- 제8장 재판국 _ 162
- 제9장 처리회 간의 재판 _ 164
- 제10장 시벌 및 해벌 _ 165
-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_ 166

제장 총칙

제1조 권징의 의의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의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위법 행위를 한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돌보아 주는 사건 일체가 포함되는 것이다.

제2조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범죄를 방지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진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데 있다.

제3조 범죄

신도, 직원, 치리회의 신앙과 행위가 성경에 위배되거나 규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범죄가 성립된다.

제4조 재판의 심급과 관할

1. 재판은 각급 치리회가 주관하되 3심제로 한다.
2. 교회는 당회가, 노회는 노회 재판국이, 총회는 총회 재판국과 특별 재판국이 재판한다.

제5조 재판위원의 제척

재판위원의 제척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재판위원이 피해자인 때
2. 재판위원이 원고, 피고 또는 그 대리인과 친족 관계가 있는 때
3. 재판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대리인이 된 때
4. 재판위원이 전심 재판에 관여한 때

제6조 재판위원의 기피

소송 당사자는 재판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위원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
2. 재판위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제7조 기피에 대한 처리

1. 재판위원의 기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재판회는 기피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재판회는 기피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그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재판위원을 교체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권징의 종류

1. 재판 결과 범죄가 있다고 확인된 때에는 판결로 책벌을 정한다.
2. 책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직원에 대하여
 - (1) 시무 정지 (2) 시무 해임 (3) 정직 (4) 면직
 - 2) 신도에 대하여
 - (1) 권계 (2) 견책 (3) 수찬 정지 (4) 출교
3. 직원에게는 신도에 대한 책벌을 단과 또는 병과할 수 있다.

제2장 소송 당사자와 소의 제기

제9조 범죄의 고소, 고발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범행을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닌 자라도 이를 고발할 수 있다.

단,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그 사건 및 상대방 인신 공격에 관한

내용을 유인물화하여 소송 제기 전에 유포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방한 자가 속한 치리회에서 처벌할 수 있다.

제10조 고소, 고발의 방식과 관할

고소, 고발을 할 때에는 고소(고발)장과 죄증 설명서를 범행자가 속한 치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소, 고발장 등의 작성

고소, 고발장에는 범행자의 주소, 성명, 범행 일시 및 장소, 범죄의 내용을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사실과 증거, 증인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고소, 고발 등의 시한

고소, 고발은 범죄 사실이 있는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13조 고소, 고발 등의 취소·취하

고소, 고발은 이를 취소 또는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된 후에는 치리회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4조 기소의 결정

1. 고소 또는 고발이 접수된 때에는 치리회는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치리회가 권징의 필요를 인정한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어도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 본 항의 기소가 결정된 때에는 치리회는 기소위원을 선임하여 원고로서의 임무를 수행케 한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제소에 대하여는 그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 1) 평소에 피소인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 2) 성품이 좋지 못한 자
- 3) 현재 재판 또는 책벌 중에 있는 자
- 4) 소송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는 자
- 5) 신앙과 지각이 부족한 자
- 6) 제소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제3장 소송 절차

제15조 재판회

1. 기소된 사건은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어 심리 판결한다.
2. 재판회는 사건이 기소된 후 8주 내에 열어야 한다.

제16조 소송 관계인의 소환

1. 재판회는 원고, 피고 및 그 대리인과 증인을 재판 기일에 소환하여야 한다.
2. 소환은 서면으로 통지하되 재판 개정 10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3. 재판회는 송달 서류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판 기일의 변경

최초의 재판 기일에 소송 관계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 기일을 변경한다.

제18조 재소환

1. 재판 기일을 변경할 때에는 소송 당사자와 증인을 재소환하여야 한다.

2. 재소환의 경우에도 일차 소환의 방법과 같다.

제19조 궐석 재판

재소환된 기일에 소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때에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심리의 절차

재판의 절차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단, 원고가 소송 계류 중에 관련 사건에 관한 유인물을 유포하면 그 건은 기각할 수 있으며, 피고가 유인물을 유포하면 재판국은 처벌할 수 있다.

1. 고소 또는 고발장 및 죄증 설명서의 낭독
2. 기소 이유의 설명
3. 원고 및 피고의 심문
4. 증거의 채택과 조사
5. 변론
6. 판결

제21조 피고의 이의

피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재판이 합법적으로 개정된 것이 아닐 때
2. 치리회가 비법적인 간섭으로 소송을 다루려 할 때
3. 고소 또는 고발장과 죄증 설명서가 양식대로 되지 않거나 법의 적용에 잘못이 있을 때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22조 이의에 대한 결정

1. 피고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재판회는 즉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이의가 이유 없을 때에는 이의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다.
 - 1) 재판의 합법적인 개정을 위한 연기
 - 2) 소송의 각하
 - 3) 고소(고발)장의 정정 또는 보완의 지시

제23조 화해의 권고

재판회는 재판 심리에 앞서 소송 당사자에게 마태복음 18장 15-17절의 주님의 교훈대로 화해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24조 화해 사건에 대한 처리

소송 당사자가 화해할 때에는 사건을 종결한다. 그러나 범죄 사실의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판회의 결정으로 계속 심리할 수 있다.

제25조 변호인의 선임

1. 원고나 피고는 본 장로회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1인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당회와 노회의 재판은 해 노회 내의 목사·장로 중에서, 총회의 재판은 교단 내의 목사·장로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한다.
3. 변호인을 선임할 때에는 변호인 선임 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변호인의 직무

1. 변호인은 당사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심문하고 변론을 한다.
2. 변호인은 실비 계산의 여비 이외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

제27조 증거 조사

증거의 조사는 증인 심문과 검증, 감정으로 한다.

제28조 증인의 자격

증인은 증인 선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인이라야 한다. 단, 교인인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회의 결의로 비교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29조 증거 신청에 대한 이의

1.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의 증거 또는 증인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의에 대하여는 재판회가 그 적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0조 증인에 대한 참작 사항

증인의 채택과 그 진술에 대한 참작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판 당사자와 친족 관계 유무
2. 재판 결과에 따른 이해 관계 유무
3. 상당한 지각과 판별력 등 공정한 증언 능력의 유무
4. 성품의 불량 여부
5. 책벌 관계 유무

제31조 증인 선서

증인은 증인 심문 직전에 다음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지금 전능하시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송 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니 후일에 산 자나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께 대답함 같이 사실대로 바로 말하고 아는 대로 다 말하며 사실 아닌 것을 말하지 아니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32조 증인 심문 및 확인

1. 증인의 심문은 재판회에서 직접 구두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회의 결정으로 위원을 파송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증인의 심문은 신청한 측에서 먼저 심문하고 상대방에서 반대 심문을 한 후 재판위원이 보충 심문을 한다.
3. 증인 심문과 그 답변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증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증거 조사위원

재판회가 증거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재판석 외의 증인 심문과 검증을 할 수 있다.

제34조 증인 심문에 관한 주의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아직 심문하지 아니한 다른 증인을 퇴장시켜야 한다.

제35조 대질 심문

재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상호 간에 대질 심문을 할 수 있다.

제36조 교인의 증언 의무

교인은 소속 치리회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에는 반드시 심문에 응해야 한다.

제37조 증인의 여비

증인의 여비와 일당은 그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증인은 여비와 일당 이외의 다른 보수는 받지 못한다.

제38조 소송 기록의 보관

소송 서류는 작성된 일자대로 편철하여 치리회가 보관한다.

제39조 소송 기록의 작성

당사자나 증인에 대한 심문 내용은 서기가 조서를 작성한 후 치리회장(국장)과 서기가 간인과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소송 기록의 등본 청구

1. 원고와 피고는 재판기록 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본 청구에는 해당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재판에 대한 모독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증인이 재판회에서 재판위원을 모욕하거나 심히 불손한 언동을 한 때에는 재판회는 직권으로 처벌할 수 있다.
2. 재판에 소환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거나 명백한 위증을 한 때에도 전항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제42조 비공개 재판

재판회는 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4장 판결

제43조 유죄 판결의 요건

재판회는 증거 조사를 하지 않거나 명백한 증거가 없이 유죄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판회에서 피고가 범죄를 자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4조 판결의 보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충분한 증거가 제출될 때까지 판결 선고를 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류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45조 판결의 성립

1. 판결은 재판에 관여한 재판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성립한다. 단, 면직 및 출교의 판결은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요한다.
2. 전항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46조 판결문의 작성

재판회는 판결 주문과 이유를 작성한 후 관여 재판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47조 판결의 통고

재판회는 판결을 조속히 원고와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고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제48조 판결의 확정

1. 당회 재판, 노회 재판의 판결은 상소 기간의 경과 후 즉시 확정된다. 단, 상소가 기간 내에 제기된 때에는 그 확정이 정지된다.
2. 총회 재판의 판결은 채용 즉시에 확정된다.
3. 교회의 재판 결과에 대하여는 사회 법정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9조 위탁 판결의 청원

치리회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판결이 어려운 사건은 그 사유를 상급 치리회에 보고하여 위탁 판결을 청원할 수 있다.

제50조 위탁 판결의 청원 처리

위탁 판결의 청원을 받은 치리회는 그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청원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청원을 기각한다.
2. 청원의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판결을 지도하며 사건을 환송하거나 직접 판결하여 청원한 치리회에 통보한다.

제51조 직할 판결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 판결 청원이 없어도 하급 치리회의 관할 소송 사건을 직접 기소를 결정하고 심리 판결하여 하급 치리회에 통보하거나 판결 지시를 할 수 있다.

1. 하급 치리회가 심리 판결하여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을 때
2. 하급 치리회의 심리 판결이 곤란하고 위탁 판결 청원도 난처한 사건일 때

제52조 위탁 판결 등의 효력

위탁 판결 및 직할 판결은 그 사건의 상소심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장 상소

제53조 상소권자

소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상급 치리회에 상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없다.

제54조 상소 기간

상소는 판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제55조 상소의 방식

상소를 하려는 자는 판결을 한 처리회에 상소장과 상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 상소인과 피상소인

원고, 피고를 막론하고 상소를 제기한 자를 상소인이라 하고 상대방을 피상소인이라 한다.

제57조 상소의 사유

상소를 제기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하회가 제반 법규를 위반하는 판결을 하였을 때
2. 처리회의 구성이 위법인 때
3. 제척될 재판위원이 재판에 관여한 때
4. 증거 조사가 본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사실 오인이 있을 때
6. 증거에 의하지 않고 확증없이 사실을 인정한 때
7. 처벌이 과중한 때

제58조 원심 처리회의 처리

상소장을 접수한 처리회는 그 소송 기록 일체를 상소장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상급 처리회에 송부하고 피상소인에게 상소 제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 상소의 처리

상소 기록을 접수한 상소 처리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상소의 제기가 상소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상소권이 없는 자
한 때에는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기각한다.
2. 상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소를 기각한다.
3. 상소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기하고 새로 판결한다.

제60조 상소심의 소송 절차

상소심의 소송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에서는 새로운 증거 조사를 하지 않고, 기록에 의하여 판단한다.

제61조 상소심의 판결 통보

1. 상소 처리회는 판결문을 작성한 후 관여 재판위원 전원이 서
명 날인한다.
2. 판결문이 작성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와 원심 처리회에 서
면으로 통보한다.

제6장 재심

제62조 재심 청구

제1심 또는 상소심에서 유죄 판결된 사건의 증거 조사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임이 드러났거나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상소 기간 만료에 관계없이 판결한 처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 재심의 청구 기한

재심은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제64조 재심의 처리

재심 청구를 받은 처리회는 다음의 처리를 한다.

1. 재심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2.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한다.
3. 재심이 결정된 때에는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 판결을 한다.

제65조 재심의 취하

1. 재심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2. 취하된 사건은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6조 재심 판결의 상소

당회 재판과 노회 재판의 재심 판결은 상소할 수 있다.

제7장 소원

제67조 소원의 사유

소원은 당회나 노회가 그 소관인 행정 사항의 결정이나 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정이나 처리가 위법이 된 때에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소속 교인, 처리 회원, 또는 처리회가 상회에 소원할 수 있다.

제68조 소원의 방식

소원에는 소원 사유 발생 후 20일 내에 소원장과 그 이유서를 소원 대상 처리회와 상급 처리회에 제출한다.

제69조 소원의 처리

1. 소원을 접수한 처리회는 소원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2. 피소원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제출한다.
3. 소원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하급 처리회에 소원 사항에 대한 결정이나 처리의 전부나 일부의 변경, 취소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0조 소원에 대한 항고

소원자나 피소원된 당회는 소원에 대한 노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내로 총회에 항고할 수 있다.

제71조 항고의 방식

1. 항고를 하려는 자 또는 당회는 항고장을 작성하여 그 결정을 한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항고장을 접수한 노회는 14일 내에 일건 서류를 총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 항고에 대한 처리

항고 서류를 접수한 총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항고의 기간이 경과했거나 항고의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하급 처리회에 소원 사항에 대한 결정이나 처리의 전부나 일부의 변경, 취소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장 재판국

제1절 노회 재판국

제73조 노회 재판국의 조직

1. 노회 재판국은 국원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목사, 장로로 구성 하되 그 과반수가 목사이어야 한다.
2. 임원은 국장, 서기로 하고 국원의 호선으로 선정한다.

제74조 노회 재판국원의 선임과 임기

1. 노회 재판국원은 노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는 위임받은 사건 이 처리 보고될 때까지로 한다.
2. 국원은 한 당회에서 2인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제75조 노회 재판국의 성원

노회 재판국은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제76조 노회 재판국의 임무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한다.

제77조 노회 재판국의 재판 기록

노회 재판국의 재판 기록은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본회가 보관한다.

제2절 총회 재판국

제78조 총회 재판국의 구성

총회 재판국의 국원은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한다.

제79조 총회 재판국원의 임기와 선임

1. 총회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총회에서 그 3분의 1을 개선한다. 단, 총회 폐회 후의 결원은 공천위원회가 보선하고 그 임기는 선임자의 임기를 계승한다.
2. 국원은 한 노회에서 2인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제80조 총회 재판국의 임원

총회 재판국의 임원은 국장, 서기로 하고 매년 총회 직후에 국원의 호선으로 선정한다.

제81조 총회 재판국의 임무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82조 공탁금

1. 총회 재판국은 제소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제소자가 승소했을 때, 그 공탁금은 제소자에게 반환한다. 단, 부분 승소일 경우에는 일부만 반환한다.
3. 제소자가 패소했을 때, 그 공탁금은 총회의 재산으로 귀속한다.

제83조 총회 재판국 판결의 처리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중대한 과오가 인정될 때에는 총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4조 총회 특별 재판국원의 선임과 임기

1. 총회 특별 재판국원은 필요할 때에 총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위임받은 사건이 처리 보고될 때까지로 한다.
2. 재판국원은 한 노회에서 2인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제85조 총회 특별 재판국의 임무

총회 특별 재판국은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부결한 사건을 맡아 심리 판결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제86조 총회 재판국의 재판 기록

총회 재판국의 재판 기록은 국장과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 관계 서류와 함께 본회가 보관한다.

제9장 치리회 간의 재판

제87조 소송의 절차 및 시한

1. 당회 또는 노회는 동급 치리회를 상대로 소송할 때에는 소속 상급 치리회에 소장을 제출한다.
2. 치리회 간의 소송은 사건 발생 후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8조 소송 위원

치리회 간의 소송에는 원고 및 피고 치리회가 각기 소송 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9조 재판의 절차 및 처리

치리회 간의 재판 절차는 소송의 일반 규례 절차에 준한다.

제90조 상소 및 재심 청구

치리회 간의 소송에도 상소 및 재심 청구가 허용된다.

제10장 시벌 및 해벌

제91조 시벌 처리회

판결이 확정된 책벌은 피고의 소속된 처리회가 시벌한다. 시벌하지 않은 처리회는 총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

제92조 시벌의 방법

1. 은밀히 범한 죄로서 공개되지 않은 죄는 처리회석에서 또는 위원을 파송하여 시벌한다.
2. 공개된 범죄는 처리회가 교회 또는 기타 공석에서 시벌 공포한다.

제93조 가중 시벌

수찬 정지된 자가 2년 내에 회개의 증거가 없거나 처리회의 판결 확정 후에도 시벌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면직 또는 출교할 수 있다.

제94조 해벌의 조건

책벌된 자가 회개의 증거가 확실할 때에는 처리회석 또는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하고 해벌할 수 있다.

제95조 출교의 해벌

출교된 교인은 해벌이 되어도 수찬 정지로 2년이 경과한 후 다시 처리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 정지가 해벌된다.

제96조 면직의 해벌 및 시무

1. 면직의 해벌로 복직된 자는 3년이 경과해야 시무할 수 있다.
2. 전항의 시행에는 시무 청빙 또는 시무 신임을 요한다.

제97조 해벌 처리회

해벌은 책벌받은 자의 관할 처리회가 시행한다.

제11장 재판의 특별 규정

제1절 직원에 대한 특별 규정

제98조 소환 불응자의 처벌

피고된 직원이 두 번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치 아니하고 변호인도 파송치 않으면 정직 처분함이 가하고 세 번째 소환에도 출석치 아니하면 수찬 정지 처분할 것이다.

제99조 소송 당사자의 회원권 제한

어느 처리회를 막론하고 교인이나 직원이 소송 중에 있을 때에는 그 처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반 의사에 언권과 투표권을 정지케 할 수 있다.

제100조 상회 회원권의 일시 정지

재판에 관련된 하회의 회원은 당해 사건을 심의 중인 상회의 회원권이 일시 정지된다.

제101조 직원의 가중 처벌

정직이나 수찬 정지를 당한 직원이 1년 안에 회개치 않으면 재판없이 면직할 수 있다.

제102조 직원의 면직 처벌

직원이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제2절 즉석 재판의 규정

제103조 즉석 재판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에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 즉석 재판에 회부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할 이유를 회록에 상기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제104조 무단 전출자의 관리

어떤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이사하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 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방 교회 목사 혹은 당회 서기에게 통지할 것이다.

1. 다른 지방에 이사한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1년을 경과하도록 이명증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받기까지 그 성명은 별명부에 옮겨 기록(연월일을 상기할 것)할 것이다.
2. 책별인 명부에는 시별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 1항에 해당한 자를 기입한다. 그리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들을 완전한 교인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3.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 보고를 하기 전에 일반 교인의 명부를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가하고 시별된 자에게는 해별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105조 장기 결석자의 지도

본 교회 입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교회에 출석치 아니하면 당회는 그 교인이 출석하도록 권면하고, 6개월이 경과하도록 계속 듣지 않으면 당회는 그 교인에게 먼저 통지한 후 처벌할 수 있다.

그 후 그 교인에 대하여 아무 비난이 없고 그 교회에 다시 출석하면 해벌할 수 있다.

제106조 목사의 사직원 처리

무흠한 목사가 정치 제26조 3.항에 의하여 노회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한 회기 동안 여유를 두고 그 사유를 상세하게 살핀 후 결정하되 그가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유익하게 시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직원을 수리하고 그를 노회 명부에서 삭제하며 입교인의 이명증서를 주어 그가 원하는 지교회로 보낼 것이다.

제107조 교단 이탈자의 처리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본 교회의 이명 허락 없이 타 교파에 가입하면 그를 제명하고 그 사건을 당회 회록에 기재할 뿐이요, 그 교인에 대하여 착수한 송안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다.

제108조 관할 이탈 목사의 처리

현저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교단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무단으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증서 없이 타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를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안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또는 출교도 할 수 있다.